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19호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기술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2. 평가분야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해양자원 (MRS)	해양광물자원 (MRS01)	해안/항만 (HLG) * 물류분야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제도에서 평가 및 지정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HLG03)
	해양수자원 (MRS02)		
	해양에너지자원 (MRS03)		
해양환경 (MEV)	해양오염방지 (MEV01)	해양안전/교통 (MSF)	선박운항 (MSF01)
	해양환경보전 (MEV02)		해상교통시설 (MSF02)
	해양환경 위해성평가.관리 (MEV03)		해양인적안전 (MSF03)
	해양생태계관리 (MEV04)	극지해양과학 (POS)	극지/해양 기초연구 (POS01)
	해양기후변화대응 (MEV05)		극지/해양 자원탐사 (POS02)
해양수산생명 (MBT)	해양수산생물자원 (MBT01)	수산양식 (FSC)	극지 공학인프라 (POS03)
	해양수산생명 현상규명 (MBT02)		증양식 (FSC01)
	해양수산신소재 개발 (MBT03)		수산생물질병관리 (FSC02)
	해양수산생물공정 (MBT04)	수산자원/어장환경 (FSR)	수산자원 (FSR01)
해양관측 및 예보 (OOF)	해양관측 및 감시 (OOF01)		어장환경관리 (FSR02)
	해양예보 및 정보 (OOF02)	어업생산/이용 가공 (FSP)	어업생산관리 (FSP01)
해양공학 (MEG)	해양플랜트 (MEG01)		수산식품유통가공 (FSP02)
	선박공학 (MEG02)	해양수산연구인프라 (MSI)	수산식품안전 (FSP03)
	해양장비 (MEG03)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시설 (MSI01)
	해양통신 (MEG04)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영향분석 (MSI02)
해양재해/방재 (MDP)	해양재해 발생분석/예측기술 (MDP01)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 (MSI03)
	해양 구난구조 (MDP02)		

3. 평가기준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2

구분	평가기준	
	공사 외 기술	공사 관련 기술
1차 심사	A. 신규성 평가(40) -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B. 기술성 평가(40) - 성능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 발전성: 해당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 가능성 -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C. 경제성 평가(20) - 생산·가격경쟁력: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수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 파급성: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A. 신규성 평가(40) -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B. 기술성 평가(40) - 품질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 공사기간 단축: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 등이 정량적으로 단축된 정도 -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C. 경제성 평가(20) - 설계·시공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파급성: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2차 심사	A. 현장적용성 평가(100) - 신뢰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적용현장에서 기존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 정도 - 안정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가능성 - 품질경영: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품질경영체계(품질계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품질개선 등) 구축 수준 -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A. 현장적용성 평가(100) - 시공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정도 - 안정성: 균질한 공사 품질 등의 재현가능성 -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3차 심사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3

구분	평가항목(100)	평가기준
전문분과 위원회	신기술 활용실적(15)	인증신기술 활용건수 /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기술수준(15)	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후속개발노력(15)	신기술 인증 후 기술 개량·개선 정도에 따라 배점
	시장성(15)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안전성(15)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대책수립 정도에 따라 배점
	기술보급 노력(25)	신기술 인증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에 따라 배점
종합심사 위원회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연장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4. 평가절차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 (3차 심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일정(안)】

시행계획 공고(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1차 심사 (대면심사)	2차 심사 (현장심사)	3차 심사 (종합심사)
해양수산부 (KIMST)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공고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	현장평가단	종합심사 위원회
8.7~9.7 (8/14~9/7)	9월~10월	10월	11월	12월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

5.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8. 7.(금) ~ 9. 7.(월)

○ (접수기간) 2026. 8. 7.(금) ~ 9. 7.(월) 15:00까지

* 2026. 9. 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 (접수방법)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s://badabom.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신규 인증심사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필수제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전산접수	별첨양식
②	(필수제출) 기술설명서	전산접수	별첨양식
③	(필수제출) 기술설명서 요약본	전산접수	별첨양식
④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전산접수	-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전산접수	-
⑥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전산접수	-
⑦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전산접수	-
⑧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전산접수	-
⑨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전산접수	-

○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6. 심사 수수료

-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면접) 심사: 20만원 (접수확인 후 납부안내)
 - 2차(현장) 심사: 50만원 (1차 심사 통과기술 대상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1건당 심사수수료)
 - 서류·면접 심사: 20만원 (접수확인 후 납부안내)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 5]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수수료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가능**. 단, 인증신기술 공고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가 유효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공동신청 기관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 포함시 수수료 감면 가능

※ 공동신청 기관은 기술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 납부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051-773-6222 sangone93@korea.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해양수산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02-3460-0393 sjahn@kimst.re.kr

* 담당자가 다수의 전화응대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으로 문의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누리집(www.mof.go.kr/www.kimst.re.kr) 사업공고(공지사항) 등을 참조